

#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김민지\*

I. 들어가며
II. 수술실 CCTV의 특성
1. CCTV의 개념 및 특성
2. 수술실의 특성
3. 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III.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률 검토
1. 헌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현행 법체계상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발생 가능 문제점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최근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보건범죄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과 의료진의 전문직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내에서 의원 직원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수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에는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하 진정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

\* 논문접수: 2019. 6. 5. \* 심사개시: 2019. 6. 5. \* 게재확정: 2019. 6. 26.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논란이 되었다.<sup>1)</sup>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2016년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가 낙상 후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직적으로 의료사고를 은폐한 혐의가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sup>2)</sup>

2016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고(故) 권대희씨가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들은 수술 과정과 관련하여 수술실 CCTV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수술 도중 집도의가 다른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웠고 해당 수술실 내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화장실 고치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등 권 씨에 대한 경과관찰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에서는 ‘권대희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sup>3)</sup>

이처럼 수술 관련 의료사고 및 보건범죄 등이 증가할수록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술 관련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리수술을 예방하여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의무화는 수술실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1) 중앙일보,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visited by May 10, 2019), <<https://news.joins.com/article/16799894>>.

2) 매일경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visited by May 10, 20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2877/>>.

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년 4월 18일 보도자료, 2019.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앞의 문헌.

5)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의무화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단체들은 각 입장을 고수하며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의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철회되었거나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도 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촉구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3년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400,000명의 환자가 예방 가능한 의료과실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sup>6)</sup> 2003년 플로리다 (Florida) 주의 Julie Ayer Rubenzer(이하 ‘Rubenzer’)는 의료기관에서 유방 성형술을 받던 도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혼수상태로 위스콘신 (Wisconsin) 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추후 사건의 진상을 밝히던 과정에서 Rubenzer에게 걱정량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 (propofol, 프로포폴)가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이에 Rubenzer의 남편인 Wade Ayer는 ‘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Victims’<sup>8)</sup>를 설립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에 힘썼으며, 많은 이들의 지지 끝에 2018년 1월 ‘Julie Ayer Rubenzer Law’라고 알려진 Assembly Bill 863<sup>9)</sup>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에 대한 수술 과정 영상 녹화, 녹화 전 사전동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영상정보 관리, 과태료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sup>10)</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6) James, J. T. “A New, Evidence-based Estimate of Patient Harms Associated with Hospital Care”. *J Patient Saf*, 2013;9:122-128.

7) The Wasingon Post, Could cameras in operating rooms reduce preventable medical deaths? (visited by June 24,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could-cameras-in-operating-rooms-reduce-preventable-medical-deaths/2015/08/25/fc2696c4-3ae2-11e5-b3ac-8a79bc44e5e2\\_story.html?utm\\_term=.61157e1e2622](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could-cameras-in-operating-rooms-reduce-preventable-medical-deaths/2015/08/25/fc2696c4-3ae2-11e5-b3ac-8a79bc44e5e2_story.html?utm_term=.61157e1e2622)>.

8) 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Victims’, Homepage (visited by June 24, 2019). <https://www.facebook.com/National-Organization-for-Medical-Malpractice-Victims-299362656863258/>.

9) An ACT to amend 146.81 (4); and to create 50.373, 146.83 (3f) (b) 3m. and 655.27 (1g) of the statutes; relating to: video recording of surgical procedures, providing an exemption from emergency rule procedures, granting rule-making authority, requiring the exercise of rule-making authority, and providing penalties.

10) Wisconsin State Legislature, Assembly Bill 863 (visited by May 20, 2019) <<http://docs>.

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도 수술실 CCTV 의무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량의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기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준수 등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sup>11)</sup> 캐나다 또한 수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 중인데, 캐나다 한 대형병원의 진료기록 3,745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7.5%의 환자가 위해 사건을 겪었으며 이 중 36.9%는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sup>12)</sup> 이에 캐나다의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CCTV로 수술실 내를 시각적으로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의 모든 자료-환자의 활력징후, 신체 내 장기 수술 부위의 이미지<sup>13)</sup> 등-를 동기화하여 기록하는 수술실 블랙박스(OR Black Box<sup>TM</su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수술실 블랙박스는 1965년 에어캐나다에서 항공 상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최초의 블랙박스에 착안하였다. Grantcharov 교수팀은 수술실 블랙박스를 운영하면서 수술 과정 중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요인들-의료진의 주의집중 방해요소, 수술기구상의 오류-과 위해 유형, 위해 시기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sup>14)</sup>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단

---

legis.wisconsin.gov/2017/proposals/ab863>.

11)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Guidance on Covert Video Surveillance in the Private Sector,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2009.

12) Baker, G. R., Norton, P. G., Flintoft, V., Blais, R., Brown A., Cox, J., Etechells, E. et al. "The Canadian Adverse Events Study: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mong hospital patients in Canada". CMAJ, 2004;170(11):1678-1686.

13) 복강경, 복막강경 수술 등의 경우 신체 내로 삽입되는 수술기구 내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술 부위에 대한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14) Jung, J.J., Jüni, P., Lebovic, G., Grantcharov, T., "First-year Analysis of the Operating Room Black Box Study". Ann Surg, <doi:10.1097/SLA.0000000000002863.>.

계이다. 따라서 수술실 CCTV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의 개념과 그 특성, 의료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을 평가한 후 추후 관련 법안 제·개정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수술실 CCTV의 특성

### 1. CCTV의 개념 및 특성

CCTV<sup>15)</sup>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이다. CCTV란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혹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된다.<sup>16)</sup>

최초의 CCTV는 1985년 영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고 이후 1993년 런던 도심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면서 CCTV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sup>17)</sup> CCTV는 공공부문에서 범죄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교통단속용, 시설안전관리용, 쓰레기 투기 방지용, 산불 및 재난관리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사적

15)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카메라, 동축선, DVR,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CTV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6)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12.

17) 차건상·신용태,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주요이슈”, 정보과학회지(제 27권 12호), 2009, 25-33면.

재산 보호를 위해 아파트 단지, 상업용 건물, 은행 등에서 범죄예방용, 시설안전관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노동현장, 사무실에서도 CCTV 사용이 일반화되었다.<sup>18)</sup>

영상정보처리기술은 빠르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초창기 영상보안 시스템은 아날로그 CCTV를 통해 수동적으로 녹화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해 관리자가 직접 감시하였다. 이후 디지털 저장장치, IP 기반기술과의 결합을 거쳐 최근에는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시대로 전환되었다. 즉, 영상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능동적 및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sup>19)</sup>

## 2. 수술실의 특성

수술실은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환자 등에 대해 외과적 수술 및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수술실에는 보호자가 전혀 출입할 수 없고 수술대 위의 환자를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다. 의료기관에 규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술실 의료진은 집도의, 보조의, 소독 간호사(Scrub Nurse), 순환 간호사(Circulating Nurse)<sup>20)</sup>, 마취의, 마취 간호사로 구성된다.

외과적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상태에 있는 환자는 수술 도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기억 또한 할 수 없다. 마취기록지는 마취 간호사 등에 의해 시간대별로 환자의 활력징후와 진정상태를 유지한 의료행위 직후 내용이 기재되지만, 수술기록지, 수술간호기록지는 수술

18) 권남기,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안내판 설치를 중심으로”, Internet & Security Focus(제10권), 2013, 85-102면.

19) 이석민·원종석·유호선, 서울시·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20) 소독 간호사는 주로 집도의, 보조의 옆에서 멸균을 유지하면서 수술보조업무를 맡고, 순환 간호사는 주로 수술실의 환경 및 감염관리를 하면서 수술지원업무를 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권성복·조경숙·박영숙·김동욱·이여진·이은희,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분석”, 간호행정학회지(제14권 1호), 2008, 72-84면.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수술이 종료된 후 집도의, 보조의, 순환 간호사 등에 의해 각 기재되기도 한다.

수술실은 의료행위의 특성 중 하나인 밀실성이 대표되는 공간이다. 수술 전·중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술실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출입 통한 제한된다. 따라서, 수술 과정 중 사실상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진료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 3. 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의료기관도 CCTV 설치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내 CCTV는 주로 도난 등 범죄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자안전관리를 용으로 사용된다.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 등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입원환자의 경우 개인물품을 소지하고 있어, 도난 등의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 및 감시하기 위하여 CCTV가 사용된다. 이외에도 폭력적인 상황, 예를 들면 의료진이 협박 및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CCTV가 사용되며, 정신건강의학과 병동과 같은 경우 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자해, 자살 및 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가 사용되기도 한다.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은 787명상 규모로 본관, 신관, 동관,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CCTV는 감시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중앙감시와 지역감시로 분류된다. 중앙감시는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감시는 특정 장소,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해당 종합병원이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총 278대였다. 중앙감시의 경우 주로 복도, 병동 입구, 주차장, 승강기홀 등 환자, 의료진, 일반인 모두의 출입이 빈번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도난 및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였다. 반면, 지역감시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CT실 등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주요 목적은 환자안전관리였다.<sup>21)</sup>

21) 김준현·김용수·김형숙·배현지·안성하·윤현옥,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

서울 소재 또 다른 종합병원은 988병상 규모로 중앙관, 제2관, 제3관, 재활관, 별관, 치과진료센터 등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기준 해당 종합병원이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총 357대였다.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시설물 관리와 재난 및 화재 예방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병동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 병동보다 설치·운영 중인 CCTV 대수가 많았다.<sup>22)</sup>

### III.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률 검토

#### 1. 헌법

우리나라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sup>23)</sup>을 정점으로 그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으로 행정상의 입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 순서에 따라 상·하위법이 정해지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하위법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 법령은 관념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형성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동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때에만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 따르면 CCTV는 개인인 환자와 의료진의 초상권,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sup>24)</sup> 등 기본권의 침해 유발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수술실

사, 서울연구원, 2013.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visited by May 17, 2019) <[https://seoul.bohun.or.kr/090etc/etc01\\_01\\_20160315.php?left=1](https://seoul.bohun.or.kr/090etc/etc01_01_20160315.php?left=1)>.

23)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24)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지문날인에 관한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가 전신, 국소, 척추 등 마취하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 가.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 목적의 공공복리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예방, 의료사고 발생 시 근거자료 확보, 대리수술 단속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있어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대주제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이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며 무면허의료 행위 등 범죄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로, 형법적인 측면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CCTV 설치 및 운영은 규범 위반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의 예방조치를 시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범죄예방<sup>25)</sup>의 하나이다.<sup>26)</sup>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상황적 범죄예방’ 개념을 기초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CCTV의 감시기능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전에 범죄 의도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차단한다는 것이다.<sup>27)</sup> 이에 반해,

---

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제 19권 2호), 2013, 271-296면.

25) 이는 잠재적인 범죄행위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하고자 하는 조치 중 하나로 노트북 절도 예방을 위해 노트북에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를 장착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26) 최민영,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 고려법학(제73권), 2014, 187-220면.

27) 김성언,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제77권), 2009, 1045-1079면.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은 범죄가 CCTV를 통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되거나 범행의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sup>28)</sup>

기본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업을 행하는 전문직이다. 의업이 다른 직무와 구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 전문직(moral profession)이라는 것이고<sup>29)</sup>, 이는 간호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 상식의 기준에서 의료진은 고의로 환자를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사죄 예방과 CCTV 설치 및 운영 간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의료법위반 혹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보건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둘째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측면에서 CCTV의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sup>30)</sup> 원고인 환자 측이 의사 혹은 병원 측을 피고로 하여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모두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료의 특수성, 즉,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의 편중성 등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환자단체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수술실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이러한 정보의 편중성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술 과정에 대한 진료기록, 즉,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간호기록지 등은 의료진이 의학용어로 작성하는바 전문적이고 편향적이지만, CCTV 영상은 일반인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의료행위의 주의의무위반 증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8) 최민영, 앞의 논문, 191면 이하.

29) 권복규,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 의사다움이란”, 대한소화기학회지(제60권 3호), 2012, 135-139면.

3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의 CCTV 사진을 보면 환자의 중요 부위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 수술실 전경을 비추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전경을 통해서는 어떠한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였는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환자의 체위는 어떠한지 등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이에 의료진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세밀한 수술 과정은 알 수 없다. 즉, CCTV가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대리수술(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료기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다.



<그림 2-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사진<sup>31)</sup>

#### 나. 법률유보의 원칙

앞서 살펴본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대주제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한

31)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visited by May 16, 2019) <[https://exciting.gg.go.kr/board/inquire.do?bbsId=BBSMSTR\\_00000000250&nttId=39124](https://exciting.gg.go.kr/board/inquire.do?bbsId=BBSMSTR_00000000250&nttId=39124)>.

다는 법률유보의 원칙<sup>32)</sup>에 의해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2019년 5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sup>33)</sup>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sup>34)</sup>은 CCTV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령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sup>35)</sup>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사항으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조 제6항 및 제7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

32)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명웅, “입법원칙으로서의 법률유보, 의회유보, 비례의 원칙”, 법제논단(제11권), 2004.

33)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10월부터 산하 안성병원에 CCTV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2019년 5월 1일부터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으로 확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의무 조항 신설을 통해 환자의 인권 보호 및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5월 10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경기도 입법예고 제2019-31호)를 한 바 있다.

34) 『개인정보보호법』(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3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된다.

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sup>36)</sup>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sup>37)</su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이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이 없는 의료기관 내 진료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복도, 주차장 등의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내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의료기관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38)</sup>

3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하며, CCTV로 취득되는 영상정보를 포함한다.

37)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앞의 문헌, 3면 이하.

38)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앞의 문헌, 8면 이하.

가이드라인은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 환자, 의료진만 출입 가능한 수술실 등<sup>39)</sup>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는 동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CCTV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수집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력한 주의를 시키고 있다.<sup>40)</sup>

### 3. 현행 법체계상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발생 가능 문제점

앞서 상술하였던 바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 수술실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나, 이는 지침일 뿐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을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 가. 정보주체로서의 의료진 권리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수술실 CCTV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앞서 말한 집도의, 보조의, 소독 및 순환 간호사, 마취의, 마취 간호사) 또한 수술실 CCTV의 정보주체가 된다.

현 법령으로서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환

39) 의료기관 내 응급실의 경우 특정 환자와 의료진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93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른 법적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어 CCTV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실 내 진료실 및 처치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앞의 문헌, 41면 이하.

40)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앞의 문헌, 41면 이하.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술 중 영상을 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정보주체인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수술 영상을 녹화하지 않거나 쌍방동의 후 녹화된 영상에 대해 정정, 삭제 및 파기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동의를 환자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받게 될 것이다.<sup>41)</sup>

#### 나. 영상정보 열람기준 미흡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고, 그 예외로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들고 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완전한 탈의를 한다는 점, 전신 및 국소마취 하에 이루어져 의식이 저하된다는 점 등 환자의 수술 과정은 완전한 사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술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CCTV를 설치 및 운영한다면 그 영상정보의 열람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은 미흡한 상태이다.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41) 실제로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하면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하였을 뿐, 수술 참여 의료진의 각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경기도 뉴스포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 전국 최초! (visited by June 25, 201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809170940397055C048&s\\_code=C048/](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809170940397055C048&s_code=C048/)>.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혹은 영상정보를 다른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아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공공기관에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법령상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이 된 경우, 보건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해 관련 기관이 요청한 경우의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다. 영상정보 보관기준 미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sup>42)</sup>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의 경우 결국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과 추후 열람하게 되는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 경위를 확인하고자 함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영상정보 보관 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I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해당 법률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CTV는 주로 범죄예방용, 시설물 관리용 등으로 사용되며 의료기관 내에서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된

4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타법개정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21호).



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선택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한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sup>43)</sup>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이 선택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선불리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현 법령으로서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을 때도 수술 중 영상을 녹화하지 않거나 쌍방동의 후 녹화된 영상에 대해 정정, 삭제 및 파기 요청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특성상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 및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법의 흠결을 해소하고 현재 선택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으로 신설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법제화함에 앞서 현재 선택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있어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기반이 다져진 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43) 흠결(Lücke)이란 법이 규율하여야 할 상황에 적절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흠결이 없는 완전성(completeness)이란 각 상황에 들어맞는 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문종욱·양석진·윤석환. “통합화 환경에 대비한 정보통신 법령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법학연구(제26권), 2007, 463-486면.

쳐야 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와 관련한 법적 필요성 및 관련 법령 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 의료진의 적절한 권리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입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 즉,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2015년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신설되었다. 환자와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 환자와 어린이의 안전 모두 중요한 공익 중 하나라는 점, 수술 과정에 있는 환자와 어린이는 치료, 보육하는 의료진, 보육교사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술실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 및 관리해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sup>44)</sup>

4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안 논의 시 영유아보육법의 조문과 이로 인해 얻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sup>45)</sup>에 대해서 재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제 현황, 환자와 의료진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의료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이차자료를 참고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자료가 한정적이어서 전체 현황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수술에 참여하는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혹은 심층 면담 등을 통하여 일차자료를 확보하여 수술실 CCTV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식, 지식, 태도 등을 분석한다면 법체계 보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의 환자와 의료진의 수술 관련 의료사고 현황 및 의료진의 직무수행만족도 파악, 외국 의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의 비교제도론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5)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권리침해, 사전동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적 재고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김태동,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제102권), 2017, 143-162면; 정순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교육법학연구(제29권 3호), 2017, 45-72면.

## [ 참 고 문 헌 ]

- 경기도 뉴스포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전국 최초! (visited by June 25, 201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809170940397055C048&s\\_code=C048/](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809170940397055C048&s_code=C048/)>.
-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 권남기,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안내판 설치를 중심으로”, 『Internet & Security Focus』 제10권, 2013.
- 권복규,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 의사다움이란”, 『대한소화기학회지』 제60권 3호, 2012.
- 권성복·조경숙·박영숙·김동옥·이여진·이은희,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14권 1호, 2008.
- 김성언,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77권, 2009.
- 김준현·김용수·김형숙·배현지·안성하·윤현옥,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서울연구원, 2013.
- 김태동,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2권, 2017.
- 매일경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visited by May 10, 20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2877/>>.
-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2호, 2013.
- 문종욱·양석진·윤석환, “통합화 환경에 대비한 정보통신 법령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2007.
- 이명웅, “입법원칙으로서의 법률유보, 의회유보, 비례의 원칙”, 『법제논단』 11월호, 2004.
- 이석민·원종석·유호선, 『서울시·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정순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교육법학연구』 제29권 3호, 2017.
- 중앙보훈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visited by May 17, 2019)

- <[https://seoul.bohun.or.kr/090etc/etc01\\_01\\_20160315.php?left=1/](https://seoul.bohun.or.kr/090etc/etc01_01_20160315.php?left=1/)>.  
중앙일보,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visited by May 10, 2019)  
<<https://news.joins.com/article/16799894>>.
- 차건상·신용태,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주요이슈”, 『정보과학회지』 제27권 12호, 2009.
- 최민영,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 『고려법학』 제73권, 2014.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19년 4월 18일 보도자료, 2019.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12.
- Baker, G.R., Norton, P.G., Flintoft, V., Blais, R., Brown A., Cox, J., Etchells, E. et al., “The Canadian Adverse Events Study: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mong hospital patients in Canada”. CMAJ, 2004;170(11): 1678-1686.
- James, J.T. “A New, Evidence-based Estimate of Patient Harms Associated with Hospital Care”. J Patient Saf, 2013;9:122-128.
- Jung, J.J., Jüni, P., Lebovic, G., Grantcharov, T., “First-year Analysis of the Operating Room Black Box Study”. Ann Surg, <doi:10.1097/SLA.0000000000002863.>.
- 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Victims, homepage (visited by June 24, 2019) <<https://www.facebook.com/National-Organization-for-Medical-Malpractice-Victims-299362656863258/>>.
-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Guidance on Covert Video Surveillance in the Private Sector,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2009.
- The Wasingon Post, Could cameras in operating rooms reduce preventable medical deaths? (visited by June 24,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could-cameras-in-operating-rooms-reduce-preventable-medical-deaths/2015/08/25/fc2696c4-3ae2-11e5-b3ac-8a79bc44e5e2\\_story.html?utm\\_term=.61157e1e2622/](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could-cameras-in-operating-rooms-reduce-preventable-medical-deaths/2015/08/25/fc2696c4-3ae2-11e5-b3ac-8a79bc44e5e2_story.html?utm_term=.61157e1e2622/)>
- Wisconsin State Legislature, Assembly Bill 863 (visited by May 20, 2019)  
<<http://docs.legis.wisconsin.gov/2017/proposals/ab863/>>.

[국문초록]

##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김민지(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 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CCTV, 수술실,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환자안전

##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Minji Kim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ABSTRACT=**

Recently,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surgical procedures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media reported that some of these accidents were involved in health crimes. Patient-advocate groups have called for mandator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CTV in operating rooms and to review legis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use CCTV f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and install it in operating rooms optional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cy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every citizen, but it can be limited by the law for public welfare. Currently, however, there is no existing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and it can be defect of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provider when CCTV is mandatorily installed in operating roo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access and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by operator are insufficient. So that, the safety of the visual data might be threatened. Furthermore, unless the period and the place of storage of the visual data are clearly defined, it is highly unlike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patient safety and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few previous study on this topic although the need for legal review about this is growing and several bills are being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Keyword : CCTV, Operating Room,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tient Safety